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서식] <신설 2019. 3. 20.>

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

※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접수번호</td><td>접수일시</td><td>처리기간 10일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임대
사업자</td><td>[] 개인사업자</td><td>성명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/tr>
<tr><td>[] 법인사업자</td><td>법인명(상호)</td><td>법인등록번호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주소(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)</td><td>전화번호(유선)
(휴대전화)
전자우편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민간임대
주택의
소재지</td><td colspan="2">건물 주소</td><td>호, 실 번호 또는 층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신고이력
확인요청
기간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/table>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7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 귀하
시장·군수·구청장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